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295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295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2나9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A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BA외 4인)

【피고,피상고인】 박CA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2나9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6517 판결, 2001. 1. 5. 선고 2000다5239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이어서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